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05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이원택 · 윤준병 · 조계원
임미애 · 이병진 · 송옥주
임호선 · 문금주 · 서삼석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면서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이고,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판매하여 활용하는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등 원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선의 추가 건설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전력계통의 혼잡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 ----- ----- ----- ----- ----- ----- ----- <u>.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